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2
----------	-----

제출년월일 : 2018. 0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핵심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
- 나. 조례의 제명을 실비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명 및 용어·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 가. 현실에 맞게 제명 및 용어·조문 정비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정비
- 나. “이장의 임무”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 예방활동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 다. “실비변상” 내용 추가(안 제4조제3항)
-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11. 8.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장”을 “평창군 이장”으로, “실비변상”을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관할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이장</u>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u>실비변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이장의 임무) ① (생략)</p> <p>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제4조(실비변상)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u>관할 군수</u>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p>	<p><u>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평창군 이장</u>----- <u>지원</u>-----</p> <p>-----.</p> <p>제2조(이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4조(실비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제5조(편의제공) ----- <u>평창군수</u> (이하 “<u>군수</u>”라 한다)-----</p>

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
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
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연락처	(033) 330 -2291